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6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할 때에는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경우와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광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매점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광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판매대, 매점 등의 설치계약신청서(구청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대여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